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허용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83호)

2026. 3.

기 후에 너 지 환경 노동 위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노조 설립·가입 허용 필요성	3
나. 신규 법률의 제정 필요성 검토	8
다. 제정안의 구성체계	11
2. 주요 조문별 검토	14
가. 정의(안 제2조)	14
나.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안 제3조)	16
다. 노동조합의 설립(안 제4조)	20
라.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자(안 제6조 및 제7조) ..	22
마.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안 제9조)	25
바. 조정 및 중재(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28
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8조)	33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21일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9조).
- 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노조 설립·가입 허용 필요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음.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나, 동법은 특정직공무원²⁾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허용³⁾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⁴⁾하고 있는바, 동 협의회는 소속 기관의 장 등과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으나⁵⁾ 공무원노조와 비교할 때 노동권이 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공무원노조의 경우 복수노조가 가능한 데 반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4)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가.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4. 삭제
 5. 별정직공무원
 - 5)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있고, ②공무원노조는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③공무원노조는 비록 파업 등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위가 허용되는 반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조항⁶⁾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집단행위가 금지됨.

<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비교 >

구 분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단위	국회·법원·헌재·선관위·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단, 국회·법원·헌재·선관위·중앙행정기관·특별시·광역시·도 등 기관 내에 하나의 연합협의회 설립 가능)
가입 범위	- 일반직, 특정직(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교원 제외), 별정직 - 가입 제한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 행사나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인 공무원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조 조합원 지위에서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인 공무원 * <u>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업무 종사 공무원</u>	- 일반직, 특정직(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u>경찰공무원</u>, 소방공무원), 별정직 - 가입 제한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 행사나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인 공무원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인 공무원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구 분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협의 대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u>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u>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제외)	기관 고유의 <u>근무환경 개선</u> , 업무능률 향상,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성희롱·괴롭힘 예방,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교섭·협의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거부·해태 등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나, 거부·해태시 제재규정 없음
집단행동	집단행동 제한적 허용 * <u>파업 등 쟁의행위 금지</u> * <u>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u> 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 미적용	집단행동 금지 * 국가공무원법 상 <u>집단행위 금지 조항 전면 적용</u>

현행법이 이와 같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노동권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치안·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절대가치의 보호 등 일반공무원과 다른 초고도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그러나 경찰공무원 또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통해 생활하는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일본을 제외한 영국·미국 등 해외국가의 경우 그 형태나 명칭, 구체적 권한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경찰공무원 직원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통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과 비슷한 정도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⁷⁾

7) 김은기,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권 4호, 2018; 박호연, “경찰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논의”, 『공공안전학연구』 제1권 제1호, 2020

이에 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음.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ILO의 제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2조)고 하면서도, “이 협약으로 규정된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고 하여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노동권을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둘째, 헌법재판소는 교정·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그 직무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공무원제도의 보장 및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⁸⁾

8) 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

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경찰공무원 등의 노동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의 보호라는 초고도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가입 허용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및 의견 개진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경찰업무·조직의 특수성, ‘경찰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치안공백 및 조직통일·효율성 저해 등으로 조직기강과 국민 신뢰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신규 법률의 제정 필요성 검토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규 법률로써 규율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기존의 법률에 관련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방식으

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의 일부개정 방식으로도, 기존 법률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새롭게 규율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사용됨.⁹⁾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경찰공무원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경찰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 가능한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58호)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만, 제정안은 공무원노조법상의 규정과 일부 다르게 규정하여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와 같은 조문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②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등으로 규정하는 반면 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③공무원노조법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는 반면 제정안은 이를 행정

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98면;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 10면.

안전부장관으로 하고, ④공무원노조법이 노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벌칙조항 적용은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부당노동행위,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및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벌칙조항은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즉, 이를 종합할 때 제정안은 기존 공무원노조법 상 공무원의 노동권 범위보다는 넓은 범위로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찰공무원과 여타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범위를 같게 할 것인지 또는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과 함께 새로운 법의 제정과 기존 법률의 개정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¹⁰⁾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단결권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근무시간면제 부여단위,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 등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다.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모두 19조의 조문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의하고(제2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제4조), 노동조합 전임자(제6조) 및 근무시간 면제자(제7조)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제9조), 쟁의행위를 금지하며(제12조), 단체교섭 결렬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목적 (제1조)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정의 (제2조)	“경찰공무원”이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3조)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	경찰공무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가입 범위 (제5조)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 - 다만, 지휘·감독권 행사 또는 타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불가능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6조)	경찰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조)	경찰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등 업무를 할 수 있음.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8조)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9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
교섭의 절차 (제10조)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정부교섭대표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음.
단체협약의 효력 (제11조)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구 분	주요내용
쟁의행위의 금지 (제12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3조)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함.
중재의 개시 (제14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중재를 함.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5조)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
회의의 운영 (제16조)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두며, 전원회의는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재 회부의 결정, 중재재정을 담당하고 소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
중재재정의 확정 (제17조)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일부 조항은 적용을 배제함.
벌칙 (제19조)	쟁의행위 금지조항 위반 및 중재재정에 따른 의무 위반시 벌칙 부과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을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②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의함.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찰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 검토의견

「국가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중 하나로 분류¹¹⁾하고 있고, 「경찰공무원법」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1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는 일반직공무원도 상당수¹²⁾ 근무하고 있는바 이들은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 중에 있음.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정의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해양경찰법」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함으로써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까지 모두 포함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제정안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소속 기관과 사무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임용권자의 지휘·복무 체계 하에 있는 공무원 조직에 서로 다른 근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병존하여 단체교섭 등이 분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관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¹³⁾

12) 2024년 12월 31일 기준 경찰청에는 일반직공무원 6,140명과 특정직공무원 131,743명이 현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해양경찰청에는 일반직공무원 1,544명과 특정직공무원 12,086명이 배치되어 있음.

13)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을 전제로 함께 발의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482호)은 제정안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을 공무원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이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범위를 소속 기관의 차이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나.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안 제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토의견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¹⁴⁾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¹⁵⁾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제3조제2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노조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각종 의무규정은 공무원이 여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내용을 제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와 노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임.

14)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15)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다만,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이행 하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은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¹⁶⁾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과 달리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공직을 직업으로 하는 ‘국민’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도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¹⁷⁾,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활동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¹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¹⁹⁾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²⁰⁾에서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조소영,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12호, 2012.12., 408면.

18) 조창중,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3.8.1.

19)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20)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며,²¹⁾ 기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²²⁾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3조제2항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정 부분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22)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노동조합의 설립(안 제4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경찰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 설립의 단위를 ‘최소단위’로 규정하여, 이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으로 하고 있음.²³⁾

이에 따라 해당 단위에 미만하는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바, 예컨대 각급 법원, 행정부 내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읍·면·

2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동 단위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한편,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²⁴⁾²⁵⁾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문언에 따른 경우 국가공무원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행정부와 달리 경찰청의 하부조직인 시·도 지방경찰청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제정안에 따른 경우 경찰업무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이나,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보수·복지 등 대부분의 근무조건은 경찰청 단위로 단일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사항은 보수 등 근무조건 결정단위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행정부 단위로 설립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치경찰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25) 2024년말 기준 자치경찰은 171명으로, 광주 12명, 제주 159명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2025.5.

때, 시·도 단위 노동조합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라.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자(안 제6조 및 제7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정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면제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공무원 복무 관계 법령에 따라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경찰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9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

다)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경찰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2) 검토의견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무시간 면제자를 두어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다만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장협회의 설립만이 허용되는바, 동법은 기관장등과의 협의 등 일부 활동만을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협의회 활동을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²⁶⁾

26)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노무 관련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며, 직장협의회 활동이 사실상 개인의 부담에 의존함으로써 지속성과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면서, 공무원 노조와 동일하게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무시간 면제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제정안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4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규정하고 있고 ‘최소단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²⁷⁾

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전임자’에 비해 결원 보충이 불가능한 ‘근무시간 면제’는 과도한 인원에게 적용할 경우 현장 인력 부족 및 업무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2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경우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4조제1항), 이들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제5조의2제3항제1호)하고 있음.

마. 교섭 및 체결 권한 등(안 제9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되,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내용임.

제정안
제9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

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사항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을 명시하면서, 비교섭사항으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나,²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국가·지자체가 행정책임주의 및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교섭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음²⁹⁾.

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게도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과 국가·지자체의 정책결정 권한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28) 박주영,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3.8.

29) 헌법재판소 2013.6.27. 2012헌바169

한편, 제정안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이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로서 인사혁신처장을 정한 것과 달리하고 있음.

이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³⁰⁾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①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³¹⁾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단체교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②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로서, 공무원노조법은 전체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³²⁾의 장을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단체교섭을 수행하는 담당자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장관을 정부교섭대표로 달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적용대상 또한 국가·지방공무원이므로 교섭 상대방인 행정부 정부교섭대표를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정할 사유가 없고, 주된 교섭대상인 국가·지방공무원 보수·복무제도 등은 법령에 따르며, 그 결정권한은 인사혁신처나 예산 소관부처에 있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결정권한이 없는 행정안전부 장

30)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31) 「정부조직법」 제47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32) 「정부조직법」 제24조(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관은 교섭 상대방으로서 적격성에 흠결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사혁신처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 조정 및 중재(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①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②조정안을 당사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도록 함.

한편,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함.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두며, 전원회의는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재 회부의 결정, 중재재정을 담당하고, 소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함.

제정안

제13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4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한다.

1. 제9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제15조(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회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2) 검토의견

공무원의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조정과 중재는 단순히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제한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짐.³³⁾

이를 고려하여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에 비해 더 긴 조정기간을 정하여 심도 있는 조정을 도모하고,³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과 별도로 위촉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위원회를 노동조합법 상 조정위원회와 중재위원회 위원 수(각각 3인)보다 많은 7인으로 구성하면서, 이들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과 중재재정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 있는 조정 및 중재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공무원노조법과 비교할 때 30일의 조정기간 이후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면서 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하되, 합의로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여 지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수를 3명으로 하는 등 보다 간소한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33)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I』 (제2판), 박영사, 2023.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조정기간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무원노조법은 심도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일로 정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공무원노조법보다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장관 외에도 시·도 교육감 등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단위의 교섭이 가능한 구조³⁵⁾로서 갈등의 복잡성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즉, 이를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공무원노조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입법례에 따를지 여부는 제정안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교섭단위 규모, 경찰공무원 직무의 성격과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제정안 제16조는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입법례에 따른 것이나 서로 다른 입법례를 차용하면서 구조적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3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서 정비가 필요함.

첫째, 안 제15조는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명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 수를 3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위원회 위원 모두가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비가 필요함.

둘째, 안 제16조는 전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중재 회부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4조는 중재의 개시 요건으로 조정위원회 중재 회부 결정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정비가 필요함.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수와 소위원회 위원 수가 동일하여 조정 담당 공익위원 모두가 소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이 조정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소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분쟁조정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임.

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8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정안의 규정이 경찰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제정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되, 노동조합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제정안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전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법인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

또한 현행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에 관한 법률로, 노동조합과 그 목적이 중복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같은 노동권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노동조합과는 역할과 기능에서 구분되는바, 제정안과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구분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경찰공무원 노동조합과 별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정안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부 노동조합법 조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유지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의 노동조합법 적용 배제 조문은 공무원노조법과 일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공무원노조법이 노동조합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제정안에는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에는 적용이 배제되나, 제정안에 적용되는 노동조합법 규정>

조문번호	내용
제29조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제60조제1항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89조제2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90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 금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규정에 위반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92조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반 하거나 조정서·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무원노조법에는 적용이 배제되나, 제정안에 따를 경우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제2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89조제2호, 제90조 및 제92조임.

이 중 제60조제1항은 조정안의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은 동일한 내용을 공무원노조법에 직접 규정³⁶⁾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이외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³⁷⁾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섭사항³⁸⁾과 비교섭사항³⁹⁾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사항으로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노동조합법이 충돌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벌칙조항인 노동조합법 제89조제2호, 제90조 및 제92조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을 예방·억제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공무원노조법이 동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이고, 형사처벌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형사고발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공직사회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합헌이라는 결정⁴⁰⁾을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8)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39)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40) 헌법재판소 2008.12.16.선고 2005헌마971 결정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민사상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노법이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정부교섭대표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입법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민사상의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배제한 것은, 정부교섭대표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남발할 우려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음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형사고발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공직사회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공노법 제17조 제3항 해

내린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것을 위헌이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고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노사관계에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경찰청은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이 준용되는 것은 경찰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당부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